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영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5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유영하·이헌승·김기웅

권영세 • 우재준 • 강선영

이인선 • 박성훈 • 임종득

김정재 · 박덕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(塡補)받을 수 있으나,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, 공정거 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,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 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,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,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준용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위 제도들을 도입함(안 제34조제4항).
- 나. 위 가.에 따라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(안 제30조제3항 내지 제4항 신설).
- 다.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시 동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바, 이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(안 제31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25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 제3항의 죄는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 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31조 본문 중 "제30조"를 "제30조(제3항은 제외한다)"로 한다. 제34조제4항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 및 제115조"를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	제30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③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
	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
	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
	관한 법률」 제112조제1항에
	<u>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</u>
	<u>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</u>
	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u><신 설></u>	④ 제3항의 죄는 제34조제4항
	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
	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
	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
	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
	를 제기할 수 없다.
③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31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	제31조(양벌규정)
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	
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	
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	
여 <u>제30조</u> 에 해당하는 위반행	<u>제30조(제3항은 제외한다)</u>
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	
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	

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해당 업무에 관하여상당한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34조(손해배상 책임) ① ~ ③ (생 략)
 -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<u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</u> 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 및 제 115조를 준용한다.

		-
		_
		_
		-
		-
		_
제	34조(손해배상 책임) ① ~ ③)
	(현행과 같음)	
	4	_
		_
	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어]
	관한 법률」 제110조부터 제1	<u>l</u>
	5조까지	